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제출연월일	2009. 5.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처함은 물론 거창군 인구증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2항).

○ 거창군내 거주자 : 3년 이상 ⇒ 1년 이상

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대상자가 재혼인 경우에는 초혼 지원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단서 신설).

다. 상위법명 개정 등에 따른 인용법명을 변경함(안 제2조제2호).

○ 「농업·농촌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호적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라. 그 밖에 지원신청서 등 관계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2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국적법」 제5조, 제6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96,000천원(2009년 본예산)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3. 18. ~ 2009. 4. 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거창군내 거주자”라 함은”을 ““거창군내 거주자”란”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촌총각”이라 함은”을 ““농촌총각”이란”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남자”를 “남성”으로,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제결혼”이라 함은”을 ““국제결혼”이란”으로, “「국적법」에 의한”을 “「국적법」에 따른”으로, “여자와의”를 “여성과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거주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 중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결혼 소요비용”을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의 지원대상이 재혼인 경우에는 초혼 지원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6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장은”을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으로,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군수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선정된 자는”을 “선정된 사람은”으로, “등록한 날”을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 한다.

제8조 중 “국제결혼으로 인하여”를 “국제결혼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1조(목적) ----- ----- ----- <u>필요한</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거창군내 거주자</u>" 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거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당해연도 1월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2. "<u>농촌총각</u>" 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3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p> <p>3. "<u>국제결혼</u>" 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거창군내 거주자</u>"란 ----- ----- <u>해당연도</u> ----- <u>1년 이상</u> ----- <u>사람을</u> ----.</p> <p>2. "<u>농촌총각</u>"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u>남성</u>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u>사람을</u> ----.</p> <p>3. "<u>국제결혼</u>"이란 「국적법」에 따른 ----- <u>여성과의</u> -----.</p>
<p>제3조(지원대상) <u>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u>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거주 농촌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 중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u>국제결혼으로</u>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u>국제결혼으로</u> ----- ----- -----.</p>

[별지 제1호서식]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u>가축(마릿수)</u>	주요 농업시설			
	<u>제공미터</u>	<u>제공미터</u>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년, 월)						
주택보유	자가(), 전세(), 월세()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비고			
<p>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혼 후 <u>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것</u>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거창군수 귀하</p>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장 사실확인	직,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 확인)	직, 부	담당 공무원	직) 성명)	(인)
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사본 읍면에서 첨부

붙임 :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1. 피추천인 인적사항(외국여성과 결혼할 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성실성, 책임감, 결혼의지 등)

-

○ 지역여론(사생활 등)

-

3. 추천인 인적사항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상기 피추천인을 『20 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서 추천인은 위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인 ○○마을이장 (인)

거창군수 귀하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8.6.22] [법률 제8749호, 2007.12.21, 전부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8.3.14]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14]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